최근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동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최근 대법원 판결

최경진

• (사실관계) 피고인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갑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〇〇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립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임명)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 중 일부인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전달받았다.

- (관련 법조문)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관련 법조문)
 -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8조제1항 · 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수능시험 감독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단3278 판결

-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들의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인 교육부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보아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감독관으로 차출된 피고인은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법 제59조 소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 제71조 제5, 6호 또는 법 제72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수능시험 감독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피고인은 위 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시)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수능시험 감독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 (이유1) 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공'의 태양에 '공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도 제3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이유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당연히 포섭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최경진 2025.5.28.

8

수능시험 감독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 (이유3) 법은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외에 법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즉 '개인정보취급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절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적절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사항과 명백히 구분되므로 이를 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 (이유4)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란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최경진 2025.5.28.

9

• (이유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더라도 이와 같은 이전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유2)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다음, 제1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mark>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mark>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3)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반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독자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mark>개인정보취급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mark>

 (이유4)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결론)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 (결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교부받은 'B'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입주자 대표인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인 D, E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 (관련법조문)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8조제1항 · 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최경진 2025.5.28.

17

수소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9고정1021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원심은 '이 사건에서 <mark>법원</mark>이 공소외 1에 대한 <mark>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mark>,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게되어 이를 제3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mark>무죄</mark>로 판단하였다.

수소법원 #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8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 1심 판결 인용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원심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외 1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를 통해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게되어 이를 제3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수소법원 #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8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 (예비적 공소사실)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으면서, 위 준비서면에 첨부된 '공소외 1'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입주자 대표인 공소외 2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수소법원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8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2498 판결 등 참조).

수소법원 #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노2688 판결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① 공소외 회사, 공소외 5(이하 '채권자들'라 한다)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공소외 회사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고, 위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위와 같은 행위 등을 하여 채권자들의 업무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② 채권자들은 2018. 7. 23.자 준비서면과 함께 공소외 1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공소외 1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진의 부본은 2018. 7. 24.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 ③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채권자들과 소송을 하는 것이 피고인의 업무(피고인의 직업은 아파트 경리이다)와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이유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다.

• (이유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6호). 한편사법부 고유 업무인 재판사무와 법원의 행정사무, 즉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최경진 2025.5.28. 24

관한 사무(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 참조) 등은 업무 목적과 내용 등에서 구별된다.

• (이유3)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및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구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사무의 주체로서 법원이 민사·형사·행정 등의 여러 재판에서 개별 사건을 단위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다음 공권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쟁송을 해결하거나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증거나 서면의 일부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다수의 개인정보 그 자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집합물, 즉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여러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써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개인정보DB부정취득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카카오톡 계정 판매'를 하는 사람임.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A정보통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의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함. 고객으로부터 문자메시지 1건당 18원을 받고 그 중 5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3원은 A정보통신이 갖기로 약정함. 그 외 카카오톡 계정을 구입하여 1개당 5~1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음

개인정보DB부정취득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대전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3. 4.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청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6,604,368건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는 개인정보 판매 수익금의 약 30%를 주기로 약정한 후, '주식, 코인, (불법스포츠) 토토 문자 가능, 대출사기문자, 성인물, 마약문자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10~20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고객들에게 A정보통신 시스템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시스템에 보관 되어 있는 수신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4,999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DB 엑셀 파일을 비롯하여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4,444,946건을 제공함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 (관련 법조문)
 -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 알선한 자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 (적용 법조문)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31

- (판결)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 2021. 3. 4.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청주시 (주소 2 생략) 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A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면 A정보시스템 사이트 내에 보관되어 있던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PC에 엑셀파일로 저장하거나 위 고객들로부터 수신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아 피고인의 PC에 저장하고, 위 일시경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1개당 1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 6,604,368건을 제공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 (공소장 변경) 적용법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로 변경
- (이유1)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바, 취득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일 것을 요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를 왜곡하여 그 왜곡된 의사에 기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 (이유2) 개인정보가 해킹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전 취득한 경우까지 그 행위 자체만으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과 '부정한 목적'이라는 요건을 혼동하는 해석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59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mark>개인정보 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은 서로 구별되는 구성요건 요소라 할 것이고, 행위자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있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바로 부정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mark>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 (이유2)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와 '그러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바, 개인정보가 해킹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전 취득 하는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더욱 자연스럽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같은 법체계 내에서 위와 같은 두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가 자신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만을 규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또다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규율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유출되어 유통 중인 개인정보를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전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규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 (이유3)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법률 제13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가 신설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1. 23. 선고 2022노1 판결

- (이유3)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알선한 자'까지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그 형량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한 형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다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에 비하여 그 형량을 중하게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타인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제3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입하여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후 이를 제공하여 그 개인정보가 유포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의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중대하다고 평가하여 이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문언 내용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이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전 거래되는 행위까지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개인정보DB부정취득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 (이유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mark>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mark> 제공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개인정보DB부정취득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인 공소외 3 등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판매자인 공소외 3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어렵다.
- 나아가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후단이 적용될 수도 없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은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얻는 것과는 구별되는 행위로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이르는 행위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 매입에 대하여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개인정보의 출처나 그 유통 경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사실관계) 2019. 2. 27. 22:38경 강원도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하여 도박현장을 단속하였다. 다음날, 피고인은 누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위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 A에게 전일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였다. A는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2019. 2. 27. 22:33 전후 도박신고자 B의 모습이 담긴 장례식장 CCTV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해당 영상을 (무단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 ❖ 검사는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을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CTV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부분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이 허가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B의 도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할 권한이 없는 A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고정89 판결

-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와 촬영한 행위 모두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 피고인이 직원 A가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CCTV 영상 시청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시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제3자모르게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제70조 제2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니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 등을 비롯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관한 판단) 공소외 2는 2019. 2. 28.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공소외 2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2 몰래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5, 54, 58면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확정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mark>피고인이 공소외 2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공소외 2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mark>,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 (CCTV 영상 시청 행위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7조 등에서 '제공'을, 제35조 등에서 '열람'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형식과 제공 및 열람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이전, 네트워크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등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정보의 '열람'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 영상 등을 죽 훑어보거나 검색·조사해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외 2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이 단순히이를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할 뿐이고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이를 '열람' 행위라고 전제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19노869 판결

- (CCTV 영상 시청 행위에 관한 판단) 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CTV 영상 시청을 통해서 '공소외 1이 전날 장례식장에서 조합장이 도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소외 1이 조합장의 도박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이 개인정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공소외 1이 조합장의 도박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결론) 원심 파기 및 무죄 선고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공소외 2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춘천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노904 판결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A가 재생한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
- 파기환송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CCTV 영상 자료를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이 허가함.
 이에 따라 CCTV 영상 무단 촬영행위 부분은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경품행사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손해배상

• (사실관계) 대형유통회사인 피고가 상담원을 통해 패밀리 멤버십 카드(FMC) 회원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다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DB를 보험회사들에게 판매. 보험회사는 필터링 작업으로 선별된 고객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 수수료 지급. 피고는 유효한 개인정보DB가 줄어들자, 미동의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미리 보험회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필터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경품행사 미도이 개이저 E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1847 판결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손해배상

- 피고는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4 원고들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20,000원,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각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경품행사응모, 인정'란 및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함께 ◎ 표시된 원고들, 같은 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란에 ○ 표시된 원고들, 같은 목록 중 'FMC 회원, 제3자 제공 미동의'란에 ○ 표시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

경품행사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55054 판결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손해배상

• 피고는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4 원고들목록 중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 또는 ◎ 표기된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인용된 1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위 원고들 중 위 '경품행사응모, 인정' 란에 ◎ 표기된 원고들의 경우 제1심 판결에서 120,000원이 인용되었는바, 위 금액 중 이 사건 경품행사 응모와 관련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100,000원에 한하여 위와 같이 본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같은 목록의 'FMC회원, 사전필터링인정' 란에 ○ 표기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인용된 5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7.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경품행사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손해배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경품행사 미도이 개이저브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손해배상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실상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이론에 따라 전환하거나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다음,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불법제공과 관련하여 기소된 최종 개인정보 건수는 약 443만 건으로 전체 미동의 FMC 회원 863만 명의 50% 남짓인점, 이 부분 원고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의 원고들은 피고의 협조 아래 수사기록 등을 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들에 제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법행위 증명책임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기타

가명처리규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처리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법률에서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공익이 가명정보가 제한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되는 정보주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명처리규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 748(병합) 전원재판부

- 재식별금지조항은 가명정보를 통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재식별을 금지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 최초 가명처리자에 한하여 재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면 가명정보로서 처리되던 정보를 다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로 되돌림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면 다른 정보주체들의 가명정보도 모두 함께 재식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식별을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재식별을 금지하여 정보주체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재식별금지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적용제외조항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여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가명정보의 성질상 적용이 어려운 규정들을 배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가명처리규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 748(병합) 전원재판부

 가명정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통지 의무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가명정보의 원활한 활용이라는 공익은 중대하고, 그 자체로 식별이 불가능한 가명정보를 제한된 목적으로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불이익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적용제외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 CCTV

- 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7368 판결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 CCTV 설치가 거주 장애인과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생활실이 공개된 장소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 2항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6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 CCTV 설치에 거주 장애인들과 상당수 사회복지사의 동의가 있었고, 위 CCTV를 설치할 공익상 필요가 있으며, CCTV 앞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촬영 여부 및 촬영 범위 등에 대한 피촬영자의 선택권이 상당한 범위에서 보장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정기각결정이 위법하지 않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선고 2023구합81091 판결
-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사례

최경진 2025.5.28.

61

월드코인 사례

• (사실관계) 월드코인 재단(케이맨제도)는 World ID, 얼굴/홍채 원본 이미지, 홍채코드처리자이고, TFH(미국)는 월드코인 지갑 앱을 개발/운영하고,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위한신원인증 기술 지원. 홍채코드를 처리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월드코인 재단 및 TFH는 독일에 소재한 TFH GmbH에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이용자가 홍채코드에 대해 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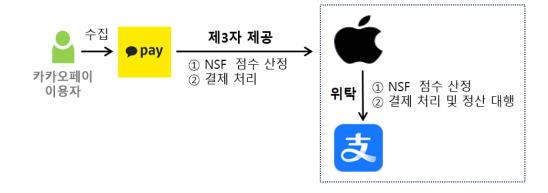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관련 의무 위반으로 7억 2,500만원 과징금 부과, TFH에게는 국외이전 관련 의무 위반으로 3억 7,900만원 과징금 부과 A재단에는 홍채코드 등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수집 및 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할 것을 시정명령

월드코인 사례

• (판단근거)

- 홍채코드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 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 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 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민감정보에 해당
- 단순히 영문으로 기재된 'Biometric Data Consent 동의 란을 선택하도록 한 행위를 유효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월드코인 재단은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 월드코인 재단 및 TFH가 홍채코드를 비롯해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음

- (사실관계)
 -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알리페이)에 제공
 - 애플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알리페이 :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로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



- (처분 내용)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애플이 사용하는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 등을 위해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제3자 제공 동의 및 국외이전 동의) 없이 애플(수탁자 알리페이)에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적법 처리 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보아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하고, 국외 이전 적법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함

- (처분 내용)
 - 애플: 애플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 위탁하면서 국외 수탁자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4억 500만 원을, 위탁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인 알리페이에 대한 국외이전(위탁)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공개하도록 시정명령. 애플의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함

- (처분 내용)
 - 알리페이: 알리페이가 구축한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은 위법하게 제공 및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구축된 것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알리페이에는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

감사합니다!

kjchoi@gachon.ac.kr